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55호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4일

대전광역시의회의장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코로나19라는 비상사태에서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0학년도 현재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고등학교 1학년의 2학기 수업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수업료 면제에 관한 적용례 규정을 변경하여 고등학교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수업료를 면제함(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교육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전화 042-270-5243, FAX 042-270-5249, E-mail : papermoon@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개정 조례안 : 붙임

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5304호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부칙 제2조제2호 중 “2020학년도”를 “2020학년도 1학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2021학년도 이후”를 “2020학년도 2학기 이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p>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 금에 관한 조례 부칙</p> <p>제2조(수업료 면제에 관한 적용례) (생 략)</p> <p>1. (생 략)</p> <p>2. <u>2020학년도</u>: 고등학교 2~3학 년</p> <p>3. <u>2021학년도 이후</u>: 고등학교 전체 학년</p>	<p>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 금에 관한 조례 부칙</p> <p>제2조(수업료 면제에 관한 적용례)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u>2020학년도 1학기</u>: ----- --</p> <p>3. <u>2020학년도 2학기 이후</u>: ---- -----</p>

비 용 추 계 서

1. 의안명 :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에 따른 고등학교 수업료 면제
- 관련 조문
 - 제3조 (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 ⑥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중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학교를 제외한 공사립 고등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면제한다.

3.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 조기시행에 따른 수업료 면제 시 비용 추계

나. 추계 결과

- 고등학교 1학년 조기시행: 8,951,043천원 / 2020년 2학기

다. 연도별 비용추계표 (별첨)

라. 재원조달방안

- 2020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 교육청 자체 부담(추가소요액)
 - ※ 2020학년도 고2~고3, 2021학년도 이후 전체 학년 재원: 증액교부금(49.4%)
/ 지자체(3.1%) / 자체(47.5%)

4. 기획예산과의 합의

5. 그 밖에 비용추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6. 작성자

작성자 이름	대전광역시교육청 재정과 안수미
연락처	042-616-8712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1학기	2학기					
세입	0	△5,587,159	0	0	0	0	△5,587,159
수업료	0	△5,587,159	0	0	0	0	5,587,159
세출	0	3,363,884	0	0	0	0	3,363,884
재정결함 보조금	0	3,363,884	0	0	0	0	3,363,884
재원조달	0	8,951,043	0	0	0	0	8,951,043
의존 재원	소계	0	0	0	0	0	0
	증액 교부금	0	0	0	0	0	0
	지자체	0	0	0	0	0	0
자체 재원	소계	0	8,951,043	0	0	0	8,951,043
	자체	0	8,951,043	0	0	0	8,951,043
지방채	0	0	0	0	0	0	0
기금	0	0	0	0	0	0	0
공기업 특별회계	0	0	0	0	0	0	0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0	0	0	0	0	0	0

[참고] 연도별 비용추계표

-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 조기시행 포함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1학기	2학기	계						
세 입	△11,198,877	△16,786,036	△27,984,913	△33,784,805	△32,604,547	△32,914,863	△33,574,886	△160,864,014	
수 업 료	△11,198,877	△16,786,036	△27,984,913	△33,784,805	△32,604,547	△32,914,863	△33,574,886	△160,864,014	
세 출	7,089,350	10,453,234	17,542,584	21,149,837	20,410,977	20,605,239	21,018,424	100,727,061	
재정결함 보조금	7,089,350	10,453,234	17,542,584	21,149,837	20,410,977	20,605,239	21,018,424	100,727,061	
재원 조달	18,288,227	27,239,270	45,527,497	54,934,642	53,015,524	53,520,102	54,593,310	261,591,075	
의 존 재 원	소 계	9,601,319	9,601,319	19,202,638	28,840,687	27,833,150	28,098,054	28,661,488	132,636,017
	증액 교부금	9,034,384	9,034,384	18,068,768	26,093,955	25,182,374	25,422,048	26,969,095	121,736,240
	지자체	566,935	566,935	1,133,870	2,746,732	2,650,776	2,676,005	1,692,393	10,899,776
자 체 재 원	소 계	8,686,908	17,637,951	26,324,859	26,093,955	25,182,374	25,422,048	25,931,822	128,955,058
	자 체	8,686,908	17,637,951	26,324,859	26,093,955	25,182,374	25,422,048	25,931,822	128,955,058
지방채	0			0	0	0	0	0	
기 금	0			0	0	0	0	0	
공기업 특별회계	0			0	0	0	0	0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0			0	0	0	0	0	

관 계 법 령

□ 초·중등교육법

제10조(수업료 등) 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거두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공립·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무상(無償)으로 한다.

1. 입학금
2. 수업료
3. 학교운영지원비
4. 교과용 도서 구입비

② 제1항 각 호의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이를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2. 3.]

[시행일]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순차적으로 시행

1. 2020학년도: 고등학교 등 2학년 및 3학년의 무상교육
2. 2021학년도 이후: 고등학교 등 전학년의 무상교육